

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 : 김포매립지 반입 처리비가 107% 인상되었는데 규격봉투가 격 인상으로 대차대조가 되는가?
- 답변요지(이평신 청소과장) : 매립지 인상분은 전혀 반영이 안되었음. 정책적으로 줄여 나가야 할 사항임.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 : 매립지 인상분을 감량으로 줄여보겠는가?
- 답변요지(이평신 청소과장) : 추경에 반영해야될 사항임.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 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167
----------	-----

제안년월일 : 1997. 1.

제안자 :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고, 동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구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시 각 자치구별로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토록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본부를 조직(본부장 : 구청장)함. (안 제2조)

나.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대책업무를 총괄하고, 재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발생할 때 재해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해기간을 정하여 관련 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은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포함, 12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함.(안 제6조)

라. 재해대책본부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재해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제9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1995.12.29 법률 제5069) 제15조
- 자연재해대책법(1996. 8. 8 법률 제5153) 제8조, 제11조

4. 참고사항

가. 예산 : 필요

다. 입법예고 : 1996.11. 7~11.26(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1996-286)

마로붙임 :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 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마포구재해대책본부(이하 "재해대책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대책본부의 조직) ① 재해대책본부에는 본부장 1인 및 차장 1인과 본부원 약간인을 둔다.

②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고 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원으로 구성하며, 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재해별 해당국장(풍수해, 설해 : 건설국장, 지진 등 : 총무국장), 재해별 해당과장(풍수해 : 하수과장, 설해 : 토목과장, 지진 등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되고, 실무반은 관련 공무원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 등으로 한다.

제3조(재해대책본부의 기능) 재해대책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관할구역안의 재해응급대책의 총괄조정 및 집행
2. 지역민반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중앙재해대책본부 또는 서울특별시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관할구역안의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재해대책본부의 운영) ① 본부장을 재해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재해대책본부를 대표하며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해대책본부 회의를 소집한다.

② 차장은 본부장은 보좌하고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재해기간 공무원 파견근무 요청)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재해관련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재해대책본부회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 12인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 및 부의장은 각각 재해대책본부장과 차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기관(이하 "재해관련기관"이라 한다)에 소속한 4급 이상 공무원(군부대의 경우 소령급 장교를,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경정급이상 경찰공무원을 말한다)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1. 구(해당국장)
2. 마포경찰서
3. 217연대
4. 서부교육구청
5. 신촌, 원효, 아현전화국
6. 마포소방서
7. 한국전력공사 서부지점
8. 서부수도사업소
9. 서울도시가스
10.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7조(재해대책본부회의의 협의사항) 재해대책본부회의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재해대책본부회의 위원의 임기)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각 기관의 당연직위원의 자의 임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재해대책본부회의 위원의 수당) 재해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 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97. 2. 21.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결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1. 21.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97. 1. 21

다. 상정일자 : 제44회 임시회 제3차위원회('97. 2. 21)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조병현 하수과장)

가.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고, 동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구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시 각 자치구별로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토록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본부를 조직(본부장 : 구청장)함. (안 제2조)

○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대책업무를 총괄하고, 재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재해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해기간을 정하여 관련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음.
(안 제5조)

-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은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포함, 12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관할구역안의 재해 응급대책의 총괄 조정 및 집행과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마포구에 재해대책본부를 두고,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재해대책본부 회의를 운영하며, 위촉위원의 회의출석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동 조례(안)의 제6조제3항에서 “위원은 다음 각호의 기관(이하 “재난관련기관”)이라 한다)에 소속한 4급이상 공무원(군부대의 경우 소령급 장교를,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경정급이상 경찰공무원을 말한다)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는 바, 제4호의 “서부교육구청”은 지방자치에 관한법률('91. 3. 8 법률 제4347호)에 의거 “서부교육청”으로 되었고, 제5호의 “신촌, 원효, 아현전화국”과 제7호의 “한국전력공사 서부지점”의 직급체계는 당 공사의 사규로써 지방공무원과 다르고, 제9호의 “서울도시가스”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로 주식회사임. 따라서 동항의 내용을 법체계에 맞도록 일부 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유응봉 위원) : 동 조례(안) 제6조제3항은 문제점이 있으나 수정하여 재심의하여야 하지 않는가?
- 답변요지(조병현 하수과장) : 동조례(안)에 대하여 문제점과 모순이 있다면 수정안으로 통과시키고 재해에 대비하여야 된다고 사료됨.

○질의요지(박상수 의원장) : 재해대책본부 구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는가?

○답변요지(건설국장 신동문) : 재해발생시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면 수정하겠습니다.

5. 토론요지 : 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함.

6. 수정안 요지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1997. 2. 21 유응봉위원의 1인

나. 수정이유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안) 입법체계상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다. 수정 주요 골자

○재해대책본부 회의 위원의 구성은 4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함(안 제6조제3항)

○위원 위촉에 대한 대상기관을 수정(안)과 같이 조정함(안 제6조제3항)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사항 : 수정(안) 별첨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167
----------	-----

제안년월일 : 1997. 2.21.

제안자 : 마포구청장

1. 수정이유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안) 입법체계상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 골자

○재해대책본부 회의 위원의 구성은 4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함(안 제6조제3항)

○위원 위촉에 대한 대상기관을 수정(안)과 같이 조정함(안 제6조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4

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1. 구(해당국장)
2. 마포경찰서

3. 217연대
4. 마포소방서
5. 서부수도사업소
6.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원안·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6조(재해대책본부 회의의 구성) ① 재해대책본부 회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 12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의장 및 부의장은 각각 재해대책 본부장과 차장이 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기관(이하 “재해관련 기관”이라 한다)에 소속한 4급 이상 공무원(군부대의 경우 소령급 장교를,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경정급 이상 경찰공무원을 말한다)중에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해당국장) 2. 마포경찰서 3. 217연대 4. 서부교육구청 5. 신촌 원효·아현전화국 6. 마포소방서 7. 한국전력공사 서부지점 8. 서부수도사업소 9. 서울도시가스 10.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p>제6조(재해대책본부 회의의 구성) ①</p> <p>.....</p> <p>.....</p> <p>.....</p> <p>②</p> <p>.....</p> <p>.....</p> <p>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4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해당국장) 2. 마포경찰서 3. 217연대 4. 마포소방서 5. 서부수도사업소 6.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8
----------	-----

제안년월일 : 1997.02.
제안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1996.12.6 법률 제4993호)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규를 현행법규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조례 내용중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함.(안 제2조)

3. 개정근거법령
 자연재해대책법(1996.12.6 법률 제4993호) 제41조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여부 : 없음
 첨부 1. 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신, 구조문 대비표
-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